

環境技術開發및 지원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安

2004. 5

環 境 部

1. 개정이유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설립, 환경측정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측정분석능력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제2항 및 제3항).
- 다. 측정대행업의 활동범위를 환경오염물질로 확대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방지시설업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安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분야별로 연도별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의 중복방지 및 소관분야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술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설립) 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2.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술예측
3.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4. 그밖에 환경기술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

⑤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중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17條”를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精度管理 결과”를 “정도관리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절차, 인정서 발급기준, 수수료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국제가이드 및 규격과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중 “大氣汚染物質, 水質汚染物質”을 “환경오염물질”로 하고, “環境部長官”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전단 및 동조제5항 본문중 “環境部長官”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후단중 “環境部長官”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環境部長官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4조 각호외의 부분중 “環境部長官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環境部長官이”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環境部長官”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環境部長官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3조(측정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방지시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條(環境技術開發綜合計劃의 수립) ① ~ ④ (생략)</p> <p>⑤環境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소관분야별로 年度別開發計劃의 推進實績을 제출받아, 이를 綜合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top: 20px;"><신 설></p>	<p>第3條(環境技術開發綜合計劃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분야별로 연도별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의 중복방지 및 소관분야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술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설립) 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④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2.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술예측

3.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4. 그밖에 환경기술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

⑤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4條(環境測定機器의 型式承認 등) ① (생략)

②環境測定機器(第1項 但書の 規定에 해당하는 環境測定機器

第14條(環境測定機器의 型式承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計量 및 測定에 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校正檢査를 받은 製品으로서 環境部長官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環境測定機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環境測定機器에 사용하는 校正用 標準紙 또는 標準가스 등 (이하 “校正用品”이라 한다)을 供給하거나 사용하는 者는 당해 校正用品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計量 및 測定에 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標準物質의 認證을 받은 校正用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第16條(測定分析機關의 精度管理)

① (생략)

② 環境部長官은 測定分析機關에 대한 精度管理 結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裝備 및 機器의 개선·補完 기타 필

국가표준기본법

③ (현행과 같음)

④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⑤ (현행과 같음)

第16條(測定分析機關의 精度管理)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도관리 결과 일정수준 이
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第17條(測定代行業의 登錄) ①大氣汚染物質, 水質汚染物質 또는 騒音·振動의 測定業務를 代行하는 營業(이하 “測定代行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략)

第18條(防止施設業의 登錄) ①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營業(이하 “防止施設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을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절차, 인정서 발급 기준, 수수료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국제가이드 및 규격과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17條(測定代行業의 登錄) ①환경오염물질-----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18條(防止施設業의 登錄) ①-----

-----시·도지사-----

항중 環境部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⑤環境部長官은 防止施設業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⑥ (생략)

第19條(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防止施設業者의 繼續施工 등)

①第1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 처분을 받은 者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都給契約에 한하여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環境部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工監理者를 지정하여 工事を 관리·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시·도지사는-----

-----.

1. ~ 8.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第19條(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防止施設業者의 繼續施工 등)

①-----

-----시·도지사는-----

-----.

② (현행과 같음)

第32條(사후관리)

① (생략)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 關係 書類·施設·裝備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第7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認證機關 또는 認證受託機關으로 하여금 材料 및 製品의 生産工程을 調查하거나 試驗·分析을 위하여 필요한 材料 및 製品을 收去하게 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 (생략)

第34條(청문) 環境部長官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第35條(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環境研究院長,

第32條(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34條(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 ~ 6. (현행과 같음)

第35條(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

<p>地方環境官署의 長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u>시·도지사</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第41條(過怠料) ① (생략)</p>	<p>第41條(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p>	<p>②----- -----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u>-- --.</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に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 -----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④----- ----- ----- ----- -----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 ----- ----- -----.</p>
<p>⑤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기술과	
연 락 처	(02) 2110-6721